

## 광주과학기술원 정관(FR-001-03)

|        |               |
|--------|---------------|
| [제 정   | 1993. 10. 11] |
| [1차개정  | 1995. 03. 29] |
| [2차개정  | 1996. 02. 03] |
| [3차개정  | 1996. 09. 04] |
| [4차개정  | 1998. 03. 30] |
| [5차개정  | 1999. 08. 24] |
| [6차개정  | 2001. 03. 19] |
| [7차개정  | 2001. 11. 06] |
| [8차개정  | 2003. 01. 21] |
| [9차개정  | 2004. 01. 13] |
| [10차개정 | 2004. 04. 22] |
| [11차개정 | 2005. 02. 17] |
| [12차개정 | 2005. 12. 27] |
| [13차개정 | 2007. 01. 02] |
| [14차개정 | 2008. 04. 03] |
| [15차개정 | 2009. 06. 29] |
| [16차개정 | 2010. 03. 29] |
| [17차개정 | 2010. 06. 07] |
| [18차개정 | 2010. 12. 24] |
| [19차개정 | 2011. 04. 06] |
| [20차개정 | 2011. 11. 11] |
| [21차개정 | 2013. 07. 08] |
| [22차개정 | 2014. 01. 10] |
| [23차개정 | 2014. 04. 01] |
| [24차개정 | 2015. 07. 08] |
| [25차개정 | 2015. 11. 13] |
| [26차개정 | 2016. 04. 15] |
| [27차개정 | 2017. 10. 31] |
| [28차개정 | 2019. 07. 17] |
| [29차개정 | 2020. 04. 21] |
| [30차개정 | 2021. 12. 30] |
| [31차개정 | 2022. 04. 07] |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광주과학기술원(이하 “광주과기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광주과기원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및 외국과의 교육·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지역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광주과기원의 주된 사무소를 광주광역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부설연구소, 연락사무소 등을 둘 수 있다.<개정 1995. 3. 29>

제4조(사업) 광주과기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급과학기술인재의 양성
2. 과학기술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국책적 중·장기 연구개발 및 기초·응용연구의 수행과 그 성과의 보급
3.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와의 수탁·위탁연구 및 공동연구
4. 광주첨단과학산업기지 활성화 및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 사업
5. 기타 광주과기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제1호 내지 제4호에 부대되는 사업

## 제 2 장 자산 및 회계

제5조(기본재산) 광주과기원은 다음 각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광주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당시 인수받은 재산
2. 대한민국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내·외 유지로부터 기탁받은 토지·건물·금전(○○금, 기부금, 보조금 등)
3. 국제기관·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원조 또는 기부받은 기계·장치·기기·공구·도서 및 기타 물품
4. 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된 재산

제6조(중요재산의 처분제한) ① 광주과기원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을 매각·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8. 3. 30, 2008. 4. 3, 2013. 7. 8, 2016. 4. 15, 2017. 10. 31>

1. 토지 및 건물
2. 교육 및 연구용 중요기계·기기 및 장치
3. 삭제 <2007. 1. 2>
4. 기타 이사회가 지정하는 주요재산

②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매각·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 2><개정 2016. 4. 15>

제7조(기금의 관리 등) ① 기금은 그 목적에 따라 특별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경비재원) 광주과기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지원금, 기금에서 발생한 과실, 국내·외로부터의 찬조금, 보조금, 차입금, 용역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사업연도) 광주과기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개정 2016. 4. 15>

[제목변경 2016. 4. 15]

제10조(사업계획서 등) ① 광주과기원의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개시일 전에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때 학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8, 2016. 4. 15, 2017. 10. 31>

② 예산총칙으로 총장에게 위임하지 않는 한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 3. 29]

제11조(결산서 등) ① 총장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월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당해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때 학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3. 30, 2001. 3. 19, 2008. 4. 3, 2010. 3. 29, 2013. 7. 8, 2016. 4. 15, 2017. 10. 31>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업계획대 실적대비표, 감사의견서와 공인회계사의 검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은 이월손실금에 보전하고 그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5>

### 제 3 장 임 원

제13조(임원) ① 광주과기원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1인
3. 이사 15인(이사장 및 총장포함) 이내
4. 총장 1인
5. 감사 1인

② 총장은 상근으로 하고 총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29]

제14조(이사) ①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는 이사회에서 선임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이사(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로 본다.<개정 1998. 3. 30, 2005. 2. 17, 2008. 4. 3, 2009. 6. 29, 2010. 3. 29, 2010. 6. 7, 2011. 4. 6, 2013. 7. 8, 2014. 4. 1, 2015. 7. 8, 2015. 11. 13, 2016. 4. 15, 2017. 10. 31>

1. 총장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추천하는 1인
3.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4.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하는 1인

②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는 학계·연구계 및 산업계에서 선임한다.

제15조(이사의 임기) ①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이사회 개최일 전에 만료될 때에는 그 임기만료 직후에 개최되는 정기이사회 또는 임시이사회 종료일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 1. 13>

② 제1항의 이사 중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이 생긴 직후에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그 후임자를 선임한다.<개정 1996. 9. 4>

제16조(이사장) 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 회의의 주재한다.

③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하고, 이사장이 결원일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한다.<개정 1996. 2. 3>

④ 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모두 결원일 때에는 이사회는 그 후임자를 지체없이 선출하여야 하며, 유고시에는 과반수 이사의 지명을 받은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8. 3. 30, 2008. 4. 3, 2013. 7. 8, 2016. 4. 15>

⑤ 총장은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에 선임될 수 없다.<개정 1996. 2. 3, 2010. 3. 29>

제17조(총장) ① 총장은 광주과기원의 직무를 대표하며, 광주과기원의 업무를 총리한다.

②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4>

③ 총장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 12. 30>

④ 총장이 결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광주과기원 직제순위에 따라 차상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0. 12. 24><개정 2021. 12. 30>

⑤ 총장은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거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 12. 24, 2013. 7. 8, 2017. 10. 31>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총장후보자 추천이 불가능할 경우 동위원회는 그 사유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직접 총장을 선임한다.<신설 2010. 12. 24><개정 2021. 12. 30>

⑦ 총장후보자는 공개모집 방식과 발굴방식을 병행하여 선출하되, 제6항과 관련한 총장 선임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24> <개정 2021. 12. 30, 2022. 4. 7>

⑧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⑨ 총장은 이사회 승인 없이 영리 목적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신설 2021. 12. 30> [전문개정 2010. 3. 29]

제17조의2(총장후보추천위원회) ① 총장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기 위하여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12. 24]

제18조(감사) ① 감사는 이사회가 선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8. 3. 30, 2008. 4. 3, 2013. 7. 8, 2017. 10. 31>

②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만료 되었을 때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 1. 21>

③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는 지체없이 후임자를 선임한다.<개정 1996. 9. 4>

④ 감사는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을 감사하며 그에 관한 부정 또는 불비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 3. 30, 2008. 4. 3, 2013. 7. 8, 2017. 10. 31>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광주과기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 4. 15., 2019. 00. 00.>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제20조(신분보장)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4. 15>

1. 법령·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 의결에 위반되었을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광주과기원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3. 심신상의 장애 또는 일신상의 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이사회가 인정하였을 때 <개정 2005. 2. 17>

## 제 4 장 이 사 회

제21조(이사회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및 총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

한다.<개정 1996. 2. 3, 2010. 3. 29>

②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이 된다.

제22조(이사회 의결·승인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 또는 승인한다.

1.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 3-1. 임원의 급여 및 제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신설 2011. 11. 11>
4. 교수, 부교수, 수석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12. 24, 개정 2014. 1. 10>
5. 교원 또는 연구원의 정년보장 임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12. 24, 개정 2014. 1. 10, 2020. 4. 21.>
6. 특별임용 또는 특별승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12. 24>
7. 중요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8. 1년을 초과하는 장기차입금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부설연구소·연락사무소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11. 기본재산 또는 기금의 설정에 관한 사항
12. 조직에 관한 사항
13. 중요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14. 기타 법령·정관으로 이사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15. 제1호 내지 제10호 이외의 사항으로서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권한을 총장에게 위임하되,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4>.

③ 제1항 제13호의 사항 중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인 경우에는 즉시 개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4>

제23조(이사회 소집 등)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3월과 12월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총장 또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한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본항에 규정한 내용을 통지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0. 12. 24, 2016. 4. 15>

⑥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 12. 24>

⑦ 정부측 당연직이사의 경우에 한하여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4>

⑧ 제7항에 따라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는 경우 해당 당연직 이사의 위임장을 이사회 개최 당일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4>

⑨ 이사회 의결사항 중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그러나 차기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며, 이 경우 제23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결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출석이사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4. 15>

1.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광주과학기술원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3. 제척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 12. 24]

제24조(이사회 의 간사) 이사회 의 회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약간인의 서기를 두되, 광주과기원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에 이사회 직무에 대한 보수는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3. 29>

제25조(이사회 의 의사록) 이사회 의 의사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2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각 이사와 감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26조(소위원회 설치·기능<개정 2010. 12. 24>) ① 이사회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에 인사·학사 소위원회와 기획·재정 소위원회를 둔다.<개정 2010. 12. 24>

② 인사·학사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신설 2010. 12. 24>

1. 광주과기원의 인사 및 학사에 관한 주요 기본정책 및 방침의 심의·의결
2. 이사회 의 의결사항 중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심의·의결

③ 기획·재정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신설 2010. 12. 24>

1. 광주과기원의 장기발전계획 및 중요한 재정운영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2. 이사회 의 의결사항 중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심의·의결

④ 이사회 의 의결사항 중 이사회가 소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토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 제 5 장 직 원

제27조(교직원의 임면) ① 교원 및 연구원은 계약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되 그 계약 내용과 기간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② 삭제 <2010. 12. 24>

③ 기타의 직원은 광주과기원 인사규정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0. 12. 24>

④ 교원(총장을 제외한다) 및 연구원은 교원인사위원회 및 연구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면한다. <신설 2020. 4. 21.>

1. 근무기간 :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급여 : 연봉제에 의하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함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학부(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 교육, 연구, 산학협력 및 기여봉사 업적 등에 관한 사항
5. 채용용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 6 장 보 칙

제28조(비밀엄수의 의무) 광주과기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지식재산권 등의 귀속) 광주과기원의 직원이 그 직무수행 중에 이룩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은 따로 계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주과기원의 재산으로 한다. 다만, 해당직원의 보상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 4. 15>

[제목변경 2016. 4. 15]

제30조(정관의 변경) ① 광주과기원의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8. 3. 30, 2008. 4. 3, 2013. 7. 8, 2017. 10. 31>

② 제1항의 의결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1조(이사회 규칙)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32조(규정의 제정)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광주과기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 3. 29>

제32조의2(경영공시) 광주과기원은 기관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시한다.

[본조신설 2001. 11. 6]

제33조(해산) ① 광주과기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8. 3. 30, 2008. 4. 3, 2013. 7. 8, 2017. 10. 31>

② 광주과기원이 해산하는 경우에 그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34조(공고방법) 법령 또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서울특별시 내



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부 칙 <1993. 10. 11>

-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사업년도) 광주과기원의 설립년도에 속하는 사업년도는 설립인가일로부터 당해년도말까지로 한다.
  - ③(사업계획서 등) 광주과기원의 설립년도에 속하는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이사회 및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④(임원의 임명) 광주과기원의 설립당시 이사(당연직 이사 제외) 및 감사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임명하며, 당연직 이사를 포함한 이사전원의 2분의 1이상이 동시에 임기만료되지 아니하도록 선임직 이사의 임기를 각각 2년, 3년으로 한다.
- 광주과학기술원의 설립을 위하여 다음의 설립자는 현금 1,000,000원을 출연하며, 광주과학기술원 설립위원 전원은 광주과학기술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1993년 11월 17일에 각각 기명 날인함.

설 립 자

|                                     |         |
|-------------------------------------|---------|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br>과학기술처장관          | 김 시 중 인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번지<br>교육부장관         | 오 병 문 인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br>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 박 재 윤 인 |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150번지                 | 김 진 현 인 |
|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2가 10-1번지<br>금호그룹회장    | 박 성 용 인 |

정관작성자

|              |         |
|--------------|---------|
| 광주과학기술원 설립위원 | 조 완 규 인 |
|              | 박 성 용 인 |

천 성 순 인  
최 한 선 인  
한 영 성 인

부 칙 <1995. 3. 29>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2. 3>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9. 4>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3. 30>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8. 24>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3. 19>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1. 6>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 21>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8조 제②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당시의 감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4. 1. 13>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4. 22>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2. 17>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27>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 2>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4. 3>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6. 29>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3. 29>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6. 7>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24>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4. 6>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1. 11>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7. 8>

①(시행일) 이 정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 10>

①(시행일) 이 정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4. 1>

①(시행일) 이 정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7. 8>

①(시행일) 이 정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1. 13>

①(시행일) 이 정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4. 15>

①(시행일) 이 정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0. 31>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7. 17.>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4. 21.>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1. 12. 30>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4. 7>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